

2026년 「ICT 벤처·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ICT융합 기술개발 지원 과제 공고(안)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AI·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지역 ICT 벤처·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6년 ICT융합 기술개발 지원」 과제를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6. 4.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I 공고 개요

- 공 고 명 : 2026년 ICT융합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충북도내 ICT/SW 벤처·중소기업
 - ※ 충북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둔 AI·ICT/SW 기업 중 자사제품/서비스/기술을 보유한 기업
- 추진목적 : AI, SW, 빅데이터, 양자 컴퓨팅 등 ICT 융합 R&D 과제지원
으로 기술경쟁력 강화
- 모집방법 : 자유공모를 통한 지원기업(과제) 선정
- 공고기간 : 공고일 ~ '26. 5. 5.(화) 17:00까지
- 지원기간 : 협약일 ~ '26. 11. 13.(금)
- 지원규모 : 4개 과제 / 기업당 최대 40백만원(도비 25, 시군비 15)

※ 사업내용 및 일정은 사업 추진 시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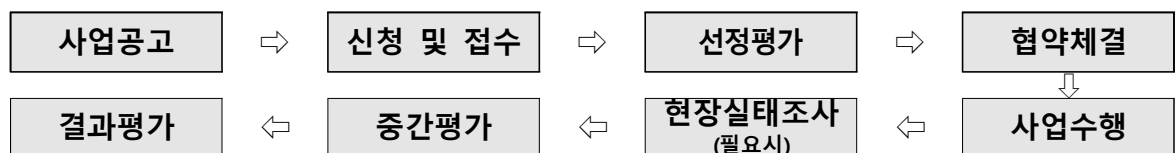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목표	사업비 규모				총지원비	비고
		도비 (50%)	시군비 (30%)	자부담 (20%)	합계		
ICT융합 기술개발	4개 과제	100,000	60,000	40,000	200,000	160,000	자부담 제외
합 계		100,000	60,000	40,000	200,000	160,000	

II 세부 지원내용

□ 지원개요

- 총사업비 : 과제당 50,000천원(지원비 4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 과제 당 지원내역 : (도비) 25,000천원, (시군비) 15,000천원, (기업부담금) 10,000천원
- 사업내용 : 지역 ICT 분야의 핵심기술개발과 신산업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 지원내역 : 인건비, 재료비(프로그래밍, 테스트 등),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여비 등 지원
- 추진절차



□ 세부사항

- 사업비 지급 : 1차 집행(50%), 2차 집행(50%)로 구분하여 지원
- 추진내용
 - ICT/SW 관련 기업이 참여하여 선정과제의 기술개발 지원 및 수행
 - 국내·외 최신 ICT 트렌드를 반영한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 산·학·연이 보유한 기술, 장비, 인력을 활용하여 성과도출이 가능토록 지원
 - 우수과제 대상으로 후속 관리·지원하여 정부 공모과제 연계 지원 예정
- 결과보고 시 참고사항
 - 결과보고서, 정산자료 및 증빙서류 등 제출 필요

□ 과제 제안(수행)시 의무사항

- 총괄책임자는 최소 30%이상 참여율로 인건비 계상

III 지원 대상

☐ 공통사항

○ 동 사업 지원 대상(ICT/SW 관련기업) 기준

- 충북도내 사업장(본사 및 지사)을 두고 있는 기업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정의된 ICT/SW 산업군에 포함되는 기업

※ 정보통신산업 및 기업 정의 참조 - 단순 도소매, 유통업은 지원대상 에서 제외

- 컨소시엄 구성 가능(제안 분야 기술 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 등으로 구성 가능하며, 참여기업은 충북도내 기업으로 한정)

○ 지원제외 대상기업

구분	지원제외 대상
검토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검토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단,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예외를 적용함) 6.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7. 외부감사기 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48조(제재처분 및 사후관리)에 의한 참여제한 기업

※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가능

☐ 유의사항

- 사업비 집행 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준용
- 부가가치세, 관세, 사후환급 등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 금액에서 제외
- 2차 사업비는 중간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또는 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 및 정산결과에 따라 후 지급 예정

IV 과제 평가 계획

□ 선정평가 위원회

- 평가위원 : 산·학·연·관 전문가 5명 내외로 평가위원 구성
- 평가방법 : 지원신청서 토대로 서면/발표 평가 진행
- 선정기준 : 신청기관의 추진의지, 대상사업의 추진단계, 파급효과, ICT 분야 비중(중요도) 등 종합하여 선정
- 평가 일정 : 2026. 5.
- 평가 항목
 - 점수배점(15분 내외 발표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사 항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합성 (30점)	○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10점
		○ 사업목적의 구체적 실현 가능성	10점
		○ 과제 수행 가능성(준비도)	10점
	과제 수행능력 (25점)	○ 사업 수행방법의 구체성(방법론)	10점
		○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10점
		○ 과제수행을 위한 사업관리방안 (추진일정, 수행조직, 업무분장)의 적정성	5점
	경영상태 및 기술력(15점)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5점
		○ SW개발 보유능력 및 기술경험, 의지, 수준	10점
	기대효과 (30점)	○ 사업화 및 한로 개척 계획의 타당성	10점
		○ 향후 사업 추진절차 및 계획의 구체성	10점
○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 가능 여부		10점	
합 계			100점

□ 중간 현장 점검

- 평가위원 : 산·학·연·관 전문가 중 2명 내외로 점검위원 구성
- 점검방법 : 기업별 40분 현장점검(2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 평가사항 : 사업내용, 사업추진현황, 사업비 집행내역, 중간성과, 향후 계획 기대효과 등 포함 ※ 필요 시 현장점검으로 대체
- 평가 일정 : 2026. 8.(예정)

□ 결과평가 위원회

- 평가위원 : 산·학·연·관 전문가 5명 내외로 평가위원 구성
- 평가방법 : 기업별 20분 평가(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과제 성공의 경우, 협약서 및 관리지침에 따라 위탁회계정산 결과에 근거하여 잔여 사업비 지급
- 과제 실패일 경우, 협약서 및 관리지침에 따라 협약해지, 지원금 또는 지원금 지분 잔액에 대하여 주관기업으로부터 환수 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 시행

- 평가사항 : 사업 목표 달성도, 결과물의 완성도 및 우수성, 사업비 집행 적정성, 성과 활용 및 향후 확산 계획 등 포함
- 평가 일정 : 2026. 11.

V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26. 5. 5.(화),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만 가능 ※ 오프라인 등록 불가

① 온라인 등록 <http://bizon.cbist.or.kr>
 ※ 회원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

(온라인) 충북과기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기업회원 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업로드

☐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양식	구분
1	· 사업신청서	별도 양식	필수
2	· 사업계획서	별도 양식	필수
3	· 제출서류 확인서	서식 1	필수
4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필요시 공장등록증)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필수
5	· 표준재무제표증명서(최근 2년간, 홈택스), 24년~25년 * '25년 신고 미완료자는 '25년 결산 재무제표 및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직인을 받은 재무제표 확인원 제출(추후 선정 시 표준재무제표 제출)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필수
6	·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	필수
7	·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3	필수
8	· 중복지원 제한 협약서	서식 4	필수
9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필수
10	· 4대보험 완납 증명서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필수
11	· 서약서	서식 5	필수
12	· 지원사업 자체평가표	서식 6	필수
13	· 지방비 매칭 협약서	서식 7	필수
14	· 자부담 확인서	서식 8	필수

※ 공고 양식 중 (서식 7) 지방비 매칭 협약서는 선정 이후 협약 시 제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세분류(KSIC)
정보 통신업	출판업 (58)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2090)
	정보서비스업 (63)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1)	자료 처리업 (63111)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1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120)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991)

대분류	업종코드	업종명
ICT제조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2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2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302	사진기, 영상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901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부품 전기 장치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ICT 서비스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61210	유선통신업
	61220	무선 및 위성통신업
	61291	통신 재판매업
SW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2	컴퓨터 시설 관리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